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4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김종양・임이자・김위상

윤영석 • 구자근 • 윤한홍

이종욱 · 송언석 · 한지아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 도록 하고, 그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창원시의 경우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총 248.4km²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748.05km²)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이들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을 포위하고 있어 도시의 공간이 단절되고, 창원·마산·진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 활성화와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창원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에 도 어긋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 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도권 외의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그 해제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2(수도권 외의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수도권외의지역으로서「지방자치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에 위치한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그 해제를 도 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u>야 한다.</u>